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희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과 우미경 의원 외 16인이 공동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목적을 둔 것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5707호로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된 것으로,
-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

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길 부탁드립니다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
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